

#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

[ ] 승인  
[ ] 신고

#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/7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--

해당 사업자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
		주민등록번호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(전화번호: )

		변경 전	변경 후			
최다액출자자 변경	•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내용					
	구 분	법인명(성명)	주식 등 소유비율(%)		총 취득금액 (원)	취득일
			취득 전	취득 후		
	해당 신청인					
	특수관계자					
	합계					
신청인	•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					
	• 최대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					
	구 분	법인명(성명)	주식 또는 지분 소유비율(%)		합의 또는 계약일	
	해당 신청인					
	합의 또는 계약 당사자					
	합계					
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지배	•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·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					
	구분	법인명(성명)	의사결정 지배내용		원인행위일	
	해당 신청인					

「방송법」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대액출자자 등 변경(승인, 신고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<p>신청인 제출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li> <li>2. 주식 취득 계획서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li> <li>3.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li> <li>4.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li> <li>5.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·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li> <li>6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7.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/li> <li>8.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 1부</li> <li>9. 경영계획서 1부</li> </ol> <p>※ 최대액출자자 변경신고는 제7호·제8호·제9호를 제외합니다.</p>	<p>수수료</p> <p>변경승인: 100,000원 변경신고: 없음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/li> <li>2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(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합니다)</li> <li>3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) 주민등록표 초본</li> <li>4. 삭제 &lt;2018. 9. 3.&gt;</li> </ol>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